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70회 임시회

**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【의원발의】
검토보고서**



2020. 4.

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0. 4. 22.

경기도시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배지훈 의원 등 6명(김인호, 박종길, 김태형, 김기열, 이성순)
- 발의일자: 2020. 3. 23.
- 회부일자: 2020. 4. 9.
- 검토기간: 2020. 4. 10. ~ 4. 17.

2. 개정이유

- 달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달서구 주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안전도시 조성 중점 지원사업 구분 신설(안 제6조 제2항)
- 방연마스크 비치사업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(안 제6조 제3항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0. 3. 23. ~ 2020. 4. 3.)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※ 참고자료: 관계법령

【 관계법령 】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